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29호 2016. 3. 23. (수)

선 결	기관의 장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0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95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5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16 - 32호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중지 고시 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324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9
 거창군 공고 제2016 - 326호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6 - 328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11

회 관									
--------	--	--	--	--	--	--	--	--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3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20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직 7급 정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10
----------	-----------

제출연월일	2016. 3. 07.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속기관(보건소) 7급 정원 조정함(안 별표)

- 보건진료: 8명 → 11명(+3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5명 → 2명(-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인 상 용

2016년 3월 23일

거창군 훈령 제395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직 7급 정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6 ~ 11
----------	-----------

제출연월일	2016. 3. 07.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7급 정원 조정함(안 별표)
 - 보건진료 7급 증3, 보건·의료기술·간호 7급 감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6-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18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하 천 명 (하천등급)	중유천 외 2개소(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726번지 외 9필지	
	면 적	378㎡(일시 248㎡, 영구 130㎡)	
	점용기간	일시 : 2016년 03월 18일부터 ~ 2016년 06월 17일 영구 : 2016년 03월 18일부터 ~ 영구	
	목적 및 사유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용수로(용수관로) 설치	

응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중지 고시

거창군 응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응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응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명칭 및 대표 : (주)일 성 대표 김영성
 - 나. 주 소 : 경남 거창군 응양면 죽림리 산136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사업위치 : 거창군 응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 : 68,613m²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 가. 처분내용 : 공사중지 2016. 03. 18 ~ 공사재개 지시 때 까지
 - 나. 사 유 : 사업구역의 불법 훼손된 산지, 농지, 구거 원상복구 후 사업시행

거창군 공고 제2016-324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 일

거 창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사유	면적 (㎡)
결정	고속 국도	제14호선 함양~ 밀양간 고속도로	시점 :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종점 :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L=98.23 (거창구간 L=11.37)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신원면 덕산리, 과정리, 구사리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 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전 체 5,846,392 (거창구간 598,374)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본 사업은 1992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간선 도로망 계획(7x9)의 동서1축과 2축의 간격(70km)이 동서간선도로망 평균간격(30~40km)보다 넓어 이를 보완하는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지역 개발촉진,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관광 동맥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함양~밀양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4. 위치도, 도로계획평면도 : 공람서류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거창군 건설과(055-940-3552)

공람서류

도로구역 결정구비 서류 (위치도, 도로계획평면도 등)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거창군 2015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도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 ·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112	102	0	0	10	103	91	21	33	17	95

2016. 3. 22.

거창군수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 3. 22.

거 창 군 수

1.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 즉시
2. 지정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
3. 공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4.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 공보 게재
5. 기타사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